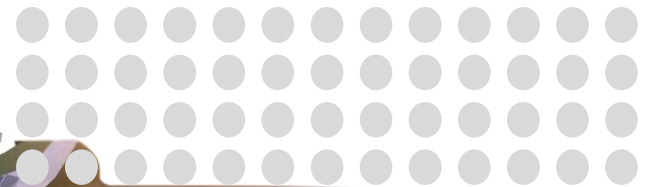


2021년 상반기 장기요양 정보공유협의회



h·well
국민건강보험



1. 장기요양서비스 지원업무 운영 안내
2.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제도 안내
3. 장기요양 웹진「행복한 동행」발행
4.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
5. 인지활동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 전문교육
6.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명칭 변경
7. 장기요양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안내
8.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 안내
9. 복지용구 관련 고시 개정
10. 걱정 청구 지원 시스템(FDS) 제도 안내
11. 장기요양기관 평가 관련 안내

☆ 참고자료 : (1)노인학대 신고대응 매뉴얼, (2)노인인권교육 이수 안내



1. 장기요양서비스 지원업무 운영 안내 ... 요양자원부 3팀

■ 목적

- 공급자 · 공단 간 신뢰형성 및 소통 강화를 통한 제도발전 도모
- 장기요양기관·종사자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요양서비스 품질 제고



■ 주요내용

- **신규 개설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설명회**
 - (목적) 신규기관 제도운영 이해증진 및 대표자 리더십 함양 등 역량강화 지원
 - (내용) 제도, 노무, 리더십,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기관운영 전반 안내
- **지역본부 특화사업(힐링 프로그램 등) 추진**
 - (목적)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 지원 사업 확대로 공단·기관간 상생발전 도모
 - (내용) 지역사회 협업, 사회적 가치 실현 도모, 힐링 등 정서적 지원 체계 마련
- **장기요양 종사자 건강증진 지원 사업 실시**
 - (목적) 종사자의 건강관리 의식 고취 및 응급상황 대처 능력 습득
 - (내용) 안전·보건 및 스트레스, 감염병 질환,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 CS 교육 등



1. 장기요양서비스 지원업무 운영 안내 ... 요양자원부 3팀

● 홈페이지에 기관·종사자간 「구인·구직시스템」 운영(연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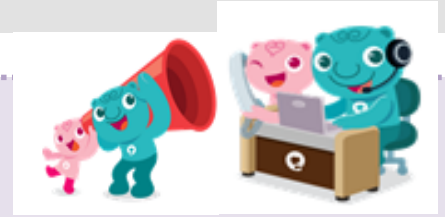
- (운영) 기관 · 종사자 : 홈페이지 '[종사자마당](#)'을 통해 구인 · 구직 등록
공단 :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체 구직등록자에 대한 취업상담 지원
 - ※ '16~'20년 : 구직등록(607건), '20년 누적 취업자 256명
 - ※ (구직 절차) 구직신청 등록 → 기관회원에 공개(구인기관에서 구직등록자에 연락)
- (개선) 구직정보 등록 및 입력 절차 간소화 → **구직등록 활성화**
 - ※ 구직등록매뉴얼 게시, '전화번호' 선택 입력(기존 필수) → 고객중심 서비스 제공

● 급여제공 전산서식 관리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연중)

- (내용) 장기요양기관 종이 없는(paperless) 사무환경 조성 ... 24종 운영
- (매뉴얼 게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전문자료실
 - » 게시번호 60018번 「급여제공서식 매뉴얼(클라우드 서식), ver. 2020.」
- (개선) 기관평가 관리 항목 추가 ... '[집중배설관찰기록지](#)' 서식 신설 등



1. 장기요양서비스 지원업무 운영 안내 ... 요양자원부 3팀



● 종사자 권익보호를 위한 **고충상담팀 운영 (연중)**

- (목적) 종사자 고충해소 및 권익보호를 통한 근로여건 개선
- (운영) 고객센터(위탁) 상담사 4명 배치 ... ☎ **033-811-2282(전용전화)**
- (방법) 직접 전화상담 외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인권위원회** 등 주무기관에 연결
- (내용) **임금체불, 제도, 부당업무, 성폭력** 등 각종 고충(애로사항) 상담

※ 고충상담 직통 전화 통화 실패 시 이후 상담사가 직접 연락(call-back system)

◆ **[참고사항]** 장기요양요원 **성희롱·성폭력 등 고충**에 대한 **유관기관 안내**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 종사자의 고충에 **대응하지 않는 기관장의 조치** 요구
-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 업무상 후유증으로 **병원진료, 산재보상** 가능 여부 문의
-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가해자 처벌을 원하고, **폭력과 성추행관련 소송**을 문의할 경우
- (여성인권진흥원 성희롱·성폭력근절 종합지원센터) **고충상담, 의료 및 법률지원** 문의
- (해바라기센터) 고충상담 및 심신치료, 법적 대응 등 **복합 민원**을 제기할 경우

※ 고용노동부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인권진흥원 종합지원센터 **02-735-7544**, 해바라기센터(권역별 기관운영)



1. 장기요양서비스 지원업무 운영 안내 ... 요양자원부 3팀

-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법 제35조의4, 시행령 제14조의3 '19'6.12.시행)
 -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하는 경우
 -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급여외행위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 장기요양요원이 이러한 사항으로 고충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업무를 전환하는 등 조치를 하고,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과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요원에게 **급여외행위 제공**을 요구하거나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 **급여외 행위 위반사례** : 기관장, 수급자(보호자) 등이 종사자를 가사도우미로 취급 하거나 수급자 보다 가족의 일을 강요하는 경우 등 ... 제28조의2
 - (**제재**) 지정취소, 6개월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 ... 제37조 제1항 3의4
 - (**벌칙**) 지방자치단체 장이 과태료(100~300만원)를 부과할 수 있음 ... 제69조 제1항 3의2





1-2.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 재강조 ... 요양자원부 2팀

- 인건비 지출비율이란? 급여유형별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고시에 명시된 비율

➡ 장기요양기관이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가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관련 근거

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6항 -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u>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u>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u>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u>
고시	△ 제11조의2(인건비 지출비율)제1항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급여유형별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다음표에 명시된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의2(인건비 지출비율)제3항 제1항의 인건비는 모든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된 기본급여, 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임금, 제11조의4에 따른 장기근속 장려금 및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한다.



1-2.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 재강조 ... 요양자원부 2팀

인건비 지출비율 ... 고시 제11조의2 참고

구분	장기요양요원	지출 비율(2020년)	지출 비율(2021년)
노인요양시설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0.4	60.5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4.9	65.0
주야간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48.1	48.3
단기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8.3	58.5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86.5	86.6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49.2	49.3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59.3	59.5



1-2.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 재강조 ... 영양자원부 2팀

● 인건비 지출비율 계산 시 '인건비'란?

- 고시 제11조의2 제1항 표에서 급여유형별 모든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된 기본급, 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임금(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기타수당*), 장기근속장려금, 사회보험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을 포함

* 기타수당 : 명절수당, 가족수당, 성과상여금, 정액급식비 등 종사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정기적인 비용

- (비율 계산) 급여유형별로 1년(1.1.~12.31.)간 제공된 급여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 방법 등 안내



- 장기요양기관이 매월 급여비용 청구 시에 공단 포털화면에서 인건비에 해당하는 임금, 사회보험기관 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입력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EDI)으로 진행하고, 또한, 제출한 내역은 수정 가능

2.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제도 안내 ... 요양자원부 4팀



치매전담형 기관 운영 시 급여비용

1일당 급여비용

(단위 : 원)

분류		일반실	치매전담실	
			가형	나형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2등급	66,710	82,280	74,050
	장기요양 3~5등급	61,520	75,870	68,270
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2등급	58,510	72,520	
	장기요양 3~5등급	53,930	66,870	

※ 일반실 대비 급여비용 인상률 : 치매전담실(가형 23.3%, 나형11%), 공생 24%, 주야간 25.8%

한시적 지원금

◆ (대상) '22.12.31일까지 치매전담형 기관으로 사업 개시한 기관

치매전담기관	지급액	지급기간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수급자 1인당 월 10만원 (입소일수 월 15일 이하인 수급자 월 5만원)	치매전담기관 수급자에게 최초의 급여를 제공하는 월부터 ~ 36개월 ※ 급여비용 청구 시 지원금 포함 청구
주야간보호	수급자 1인당 월 5만원 (이용일수 월 10일 이하인 수급자 월 2만5천원)	



2.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제도 안내 ... 요양자원부 4팀

이용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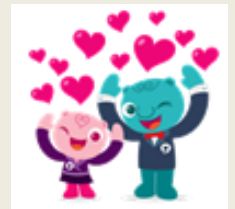
● 2~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 기재 및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 확인자

(다만, 2등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1등급 및 2등급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이용 제한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만 이용 가능



● 이용대상자 확인방법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맨 뒷장)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안내]의 치매전담형에 체크 ☒된 자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안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치매가족휴가제(24시간 방문요양)
√	치매전담형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시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침(매뉴얼) 게시 예정

-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2-1. 비접촉 면회 (영상, SNS 등) 안내 ... 요양자원부

■ 목적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르신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보호자의 불안감 해소

■ 주요내용

● 보도 자료들

- 코로나로 장기간 면회 금지된 보훈요양원, 영상 면회 확대 (2021.2.9. 뉴시스)
- “부모님과 영상으로 만나요” ... 성남시 47곳 요양시설 디지털 면회 (2021.1.13. 뉴스1)
- * 코로나19로 면회 금지돼 영상통화.밴드 통해 안부 확인



- 입소시설의 면회 제한 장기화에 따라 가족 등이 어르신에 대한 안부 확인 등 어려움 호소
 - 정서적 불안감과 염려를 덜기 위해 비접촉 방식으로 안부 확인 소통 강화
 - 영상통화, SNS, 손편지 전달 등 어르신과 가족 간 정기적인 소통을 통한 안부 확인

3. 장기요양 웹진 「행복한 동행」 발행 ... 요양교육부 1팀

주요내용

● 웹진 구성 : 4섹션 17칼럼

섹션 명	칼럼 명
건강한 정보	이달의 이슈, 건강TV, 행복 가득 우리동네, 지식 충전소
이로운 보험	궁금해요 노장, 공단 소식, 공단 사람들, 심사청구사례
행복한 노후	즐거운 프로그램, 어르신이 달라졌어요!, 급여제공 우수사례, 감동 있는 이야기
꽃다운 인생	명사의 노후생활, 세상 풍경, 건강한 밥상, 이벤트, 노장 퀴즈 달인

- 제도 관련 새 소식 및 어르신을 위한 지자체 운영 프로그램 소개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현장, 체험 사례, 급여제공 우수사례 등 제공
- 건강정보, 취미생활, 제철음식 등 유용한 콘텐츠

● 발행주기 : 매월 발행(5일)

● 구독방법

- (모바일) 구글 플레이 스토어 → [장기요양웹진] 앱 다운받아 접속

※ 안드로이드만 이용 가능, 앱 PUSH 알람 제공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홍보관 / 장기요양보험 소식지





4.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 ... 요양교육부 1팀

■ 목적

- 장기요양 서비스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로 제도의 효과성 강화

■ 추진계획 및 일정

- 공모기간 : 2021.3.2.(화) ~ 3.31.(수) 18:00까지 30일간
- 공모분야 : 체험수기(A4용지 4~5매), 사진(1인 1점)
- 참가대상 : 전 국민(공급자, 이용자 구분 접수)
- 공모방법 : 홈페이지(노인장기요양보험, 한국일보)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수상작 선정(46작품) : 체험수기 20편, 사진 26점 ... 내.외부 전문가 심사



구 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대상자	상금	대상자	상금	대상자	상금
계	46작품	2명	150만원	15명	550만원	29명	720만원
체험수기	20작품	1명	100만원	5명	각 50만원	14명	각 30만원
사 진	26작품	1명	50만원	10명	각 30만원	15명	각 20만원

- 당선작 공고 및 시상 : 6~7월



5. 인지활동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전문교육 ... 요양교육부 3팀

목적

- 코로나19 대응 및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21년 치매전문교육(온라인,오프라인 혼합교육) 실시

주요내용

- 대상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치매전담형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교육방법 : 이론은 온라인교육으로, 실습 및 시험은 집합교육 혼합 방식으로 운영
 - 온라인 교육 : 학습 기간 약 1개월 ... 33차시(요양보호사), 38차시(프로그램관리자)
 - 집합 교육 : 온라인교육 이수 후 1개월 이내 ... 1일(요양보호사), 2일(프로그램관리자)
- 교육비 : 온라인교육 전환에 따른 교육비 감액
 - 방문요양, 시설 과정 (요양보호사): 4만원, 프로그램관리자 과정: 4만 9천원
- '21년 운영기간 : 3~11월 총 7차수 운영 (차수당 3개월, 1만명)
 - (공고·신청) 3~9월, (온라인 교육) 4~10월, (집합 교육) 5~11월
 - (교육 공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종사자마당





6.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표준→개인별) 명칭 변경 ... 이용지원부 1팀

■ 주요내용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명칭 변경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명칭은 일반적이고, 표준화된 계획서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법률 개정
 - 수급자의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욕구, 급여종류 등을 작성하는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계획서의 목적에 맞게 명칭 변경
- ※ 명칭 변경 이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용이 가능하며, 별도 재발급 불필요

■ 참고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법률 제17777]
 - 공포일(시행일) : 2020.12.29.(2021.6.30.)
 -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자료실 / 법령자료실





7. 장기요양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안내 ... 이용지원부 4팀

■ 개요

-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 중 부양부담이 높은 수발자(가족)를 위한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사업 운영(2017년 ~ 현재)
 - 수급자 부양상황과 욕구를 반영한 1:1 심리상담 및 지역사회자원연계 등 다차원적 프로그램 제공
 - 현재 65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점차적으로 대상 지역 확대 예정

■ 안내사항

- 가족상담 참여 희망자 연계 협조 요청
 - 재가급여 제공 또는 수급자 상담 과정 중 희망자 발견 시 공단에 통보
 - (대상) 하루 6시간 수급자를 수발하고 부양부담이 높은 자 또는 참여희망자, 수급자가 치매인 경우
 - (방법) 가족상담 희망자 통보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 운영센터 팩스 또는 내방 수시 접수(~12월)





7. 장기요양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안내 ... 이용지원부 4팀



참고자료

● 대상자 선정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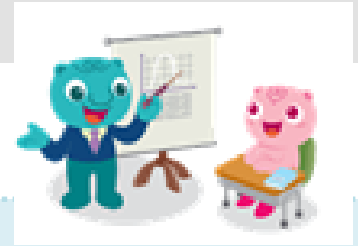
구분	선정기준	제외기준
가족 부양자	- 하루 6시간 이상 수급자 수발 - 부양 부담이 높은 자 - 수급자가 치매인 경우 선정 조사 제외 - 참여 희망자	- 인지장애자 -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에 문제가 있는 자 - 전염성 질환 보유자로 타인에게 질환을 옮길 가능성이 있는 자 - 폭력 성향이 있는 자

●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일정(2월~12월)

구분	1기	2기	3기
기간	2.8~5.22.	5.24~9.4.	9.6~12.18



8.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 안내 ... 요양급여부 3팀



■ 개요

●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2019년~)

- 하나(동일한 기관기호)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상태와 욕구에 따라 여러가지 재가서비스를 월 단위로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
- (대상) 인력기준 충족 기관 모두 참여 가능 ... 수시 신청 접수(본부)
- (급여모형) 기준 제공일수(시간) 이상 제공 시 월정액(월 한도액의 100%) 지급

구분	주야간보호통합형(주야간보호+방문요양(목욕))	가정방문통합형(방문간호+방문요양(목욕))
인력	• 주야간보호 정원과 이용자 10명 이상에 해당하는 인력배치 • 사회복지사, 간호사 각 1인 이상 의무 배치	• 방문요양 이용자 15명 이상에 해당하는 인력배치 • 간호사, 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 의무 배치
급여 제공	• 주야간보호 월 8회 및 방문요양 월 1회 이상 필수 제공 • 등급별 기준일수(방문요양 일평균 제공시간 등) 준수 필요	• 방문간호 월4회 및 방문요양 월4회 이상 필수 제공 (5등급 방문간호 2회 이상 가능) • 등급별 기준 일수(방문요양 일평균 제공시간 등) 준수 필요



8.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 안내 ... 요양급여부 3팀

■ '21년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 지침 일부개정('21.1.1. 시행)

● 주요 변경사항

- (신설) 1~4등급 수급자 중 다횟수 방문요양 대상자에게 주 2일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 다횟수 방문요양 제공 시 가산금 지급 (최대 8일까지 인정)
- (변경) 방문간호 시설장 직접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제공이 가능
- (변경) 동일한 날, 차량을 이용한 방문목욕+요양 또는
방문목욕+간호 제공 시 → 총 횟수와 상관없이 2일로 산정
- (변경) 급여제공 기준 일수 및 평균 방문요양 시간 조정



■ 참고자료

● 다횟수 방문요양 제공 시 가산금액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다횟수 1일	9,380원	8,750원	8,130원	7,500원
다횟수 8일(최대)	75,040원	70,000원	65,040원	60,000원



8.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 안내 ... 요양급여부 3팀

● 급여제공 기준 일수 및 평균 방문요양 시간

구분	'20년			
	주야간보호통합형		가정방문통합형	
등급	급여제공 기준일수 (일)	1일 평균 방문요양 시간(분)	급여제공 기준일수 (일)	1일 평균 방문요양 시간(분)
1	24	200	27	220
2	22	200	25	200
3	21	180	24	180
4	20	150	23	160
5	18	150	22	150



구분	'21년			
	주야간보호통합형		가정방문통합형	
등급	급여제공 기준일수 (일)	1일 평균 방문요양 시간(분)	급여제공 기준일수 (일)	1일 평균 방문요양 시간(분)
1	23	200	26	200
2	21	190	24	180
3	21	150	24	160
4	19	150	23	150
5	18	140	21	150





9. 복지용구 관련 고시 개정 ... 복지용구부 1팀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 기준에 관한 고시('21.2.1. 시행)

● 주요 변경사항

- 사용 가능 햇수 신설(실내용 경사로, 2년)로 인한 급여기준 변경



■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1.2.1. 시행)

● 18개 품목 565개 제품 → 562개 제품(신규 47개, 가격조정 17개, 제외 50개)

- 경사로(실내용) 11개 제품 신규 등록 ... 사용 가능 햇수 2년, 구입한도 6개

● 참고자료 ➡ 고시·세부사항 전문 및 주요 개정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

- 알림·자료실 > 자료실 > 법령자료실
- 알림·자료실 > 복지용구 안내 > 공지사항



10. 걱정청구 관리 시스템(FDS) 제도 안내 ... 심사운영부 3팀

■ 걱정청구 관리 시스템(FDS)?

- 장기요양급여, 건강보험자격, 출입국내역 등 공단이 보유한 자료를 통해 장기요양기관 청구경향 분석과 걱정청구를 관리하는 시스템

※ FDS : Fair Detection System

■ 주요 역할

-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착오청구 유형 분석 및 자료제공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걱정청구를 유도 · 지원

■ 검출 유형 활용

- **현지확인심사** 등 장기요양기관 청구내용 점검
 - 종사자(수급자) 해외출국 기간 중 청구, RFID 전송률이 낮은 기관 등
- 착오청구 유형 검출 명세서에 대한 **정밀심사 실시**
 - 방문목욕 주 1회 초과 청구, 모니터링 불일치 건 등





10. 적정청구 관리 시스템(FDS) 제도 안내 ... 심사운영부 3팀

다빈도 검출 사례 게시

- 게시 주기 : 2020년 반기별(6, 10월) → 2021년 분기별(1, 4, 7, 10월)
- 게시 위치 : 장기요양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또는
장기요양 업무포털 > 공지사항 및 청구심사게시판 알림방

다빈도 검출 유형

1) 종사자(수급자) 해외출입국 모델

- 종사자(수급자)의 출입국시간 사이에 급여제공 된 경우

2) 서비스 과다 청구 모델

- RFID 태그를 시작만 전송하는 경우

3) (월 변경)방문목욕 초과 모델

- 월이 변경되는 주에 수급자 기준으로 방문목욕 횟수가 1회 초과인 경우

4) 교차청구 모델

- 수급자와 가족관계인 요양보호사 여러 쌍이 서로 수급자를 교차하여 청구하는 경우





11. 장기요양기관 평가 관련 안내 ... **요양평가부 1팀**

■ '21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 실시 안내

- **대상** : 5,246개소('19.12.31.까지 지정받은 시설 급여 제공 기관)
- **기간** : 3.2. ~ 11.30. ... 코로나19 백신접종 시기 등 고려하여 4월 이후 개시 예정
- **주요변경사항** : 평가일정 통보방식 변경 ... 상·하반기 일정 사전 안내
 - (1차) 평가계획 공고 후 15일 이내 상·하반기 일정 안내
 - (2차) 평가예정 7일 전 통보
 -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일정 연기 불가
 - 평가매뉴얼 설명 동영상 게시
 - ※ 경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종사자마당 > 직무교육 자료실
 - ※ 평가매뉴얼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공지사항



■ '20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공표

- **대상** : 5,891개소(전체 6,623개소 중 폐업 등 732개소 제외)
 - 평가기간 : '20.4.20~'20.12.31.(약 8.5개월)
- **일정** : 등급결정 및 결과공표(4월) → 가산금 지급(6월)



11. 장기요양기관 평가 관련 안내 ... 요양평가부 1팀

평가제도 개선 사항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20.12.17.)
 - (주요내용) 시설급여 평가지표 개선*(제3조 별표 1), 거짓으로 평가 받은 기관에 대하여 기획(불시) 평가** 근거 신설(제4조제4항) 등

* '21년 시설평가지표 50개(신설 2, 보완 26, 유지 22)

** 공익제보 → 기획(불시) 재평가 → 평가위원회 심의 → 결과 재공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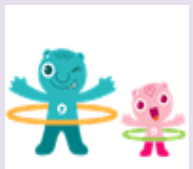
- (행정처분 강화) 평가 거부·방해 또는 기피 기관, 자료 제출 거부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항 제3의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자료제출), 동법 제69조(과태료 부과)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

◆ 행정처분 (' 19.12.12. 시행)

위반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평가거부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 과태료 부과 금액 (' 19.12.12. 시행)

위반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자료제출거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참고자료

(1) 노인학대 신고대응 매뉴얼



(2) 노인인권교육 이수 안내



참고자료(1) 노인학대 신고대응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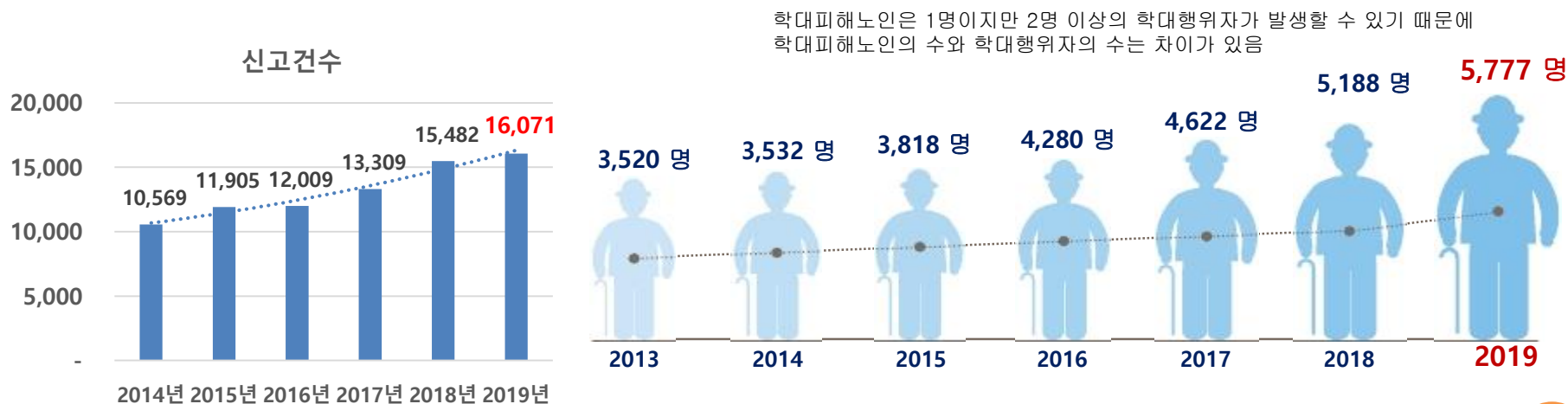
- 노인학대란?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 노인학대의 특성

- ① **지속성** : 오랜 기간 동안 학대행위가 계속됨
- ② **복합성** : 가족 및 관계 내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원인이 존재함
- ③ **반복성** :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하여 발생함
- ④ **은폐성** : 묵인되고 은폐되며, 남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음 “그래도 내 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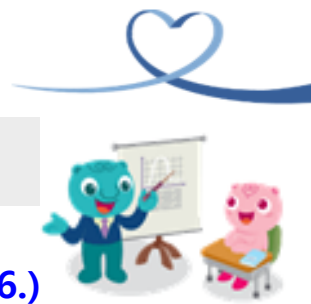


■ 2019년 노인학대 신고건수 및 발생 현황(5,243건, 신고건수의 32.6%, 5,777명)



※ 출처 : '2019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20)

참고자료(1) 노인학대 신고대응 매뉴얼



■ 노인학대 발생 현황 (자료 : 2019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20.6.)

- (1) 학대 행위자 : 남자 4,004명(69.3%), 여자 1,773명(30.7%)
- (2) 피해 노인과 관계 : 아들 1,803건(30.2%), 배우자 1,749건(30.3%), 의료인·시설종사자 등 관계자 1,067건(18.5%), 딸 438건(7.6%), 피해자 본인 200건(3.5%) 등 5,777명(학대 행위자 1명 이상)
- (3) 학대장소 : 가정 4,592건(79.5%), 시설 976/건(16.9%), 병원 74건(1.3%) ... 재학대장소 : 가정(97.8%)
- (4) 학대유형 : 정서적 학대(42.1%), 신체적 학대(38.1%), 방임(9.0%), 경제적 학대(5.2%)
- (5) 피해노인 가구형태 : 노인부부 1,669명(31.8%), 자녀동거 1,588명(30.3%), 노인단독 1,039명(19.8%)
- (6) 신고자 : 경찰관 등 관련 기관(64.0%), 친족(7.4%), 사회복지전담공무원(7.2%), 피해자 본인(6.8%), 노인복지시설 종사자(4.3%), 가정폭력 관련 종사자(1.6%), 공단 요양직 직원(1.3%)
- (7) 재학대 행위자 : 아들 227명(44.2%), 배우자 198명(38.6%), 딸 29명(5.7%) 등 513명
- (8) 노인특성 : 주거형태는 자택 3,177명(60.6%)에서, 교육 정도는 초졸 2,145명(40.9%)이, 치매노인 1,381명(26.3%)이 가장 많았음
- (9) 노-노학대 : 학대행위자 연령대는 70세 이상이 1,759건(30.4%), 50~59세 1,465건(25.4%), 60~69세 930건(16.3%) 순서로 노-노학대는 꾸준히 증가

*노(老)-노(老)학대 의미 : ① 60세 이상 고령자의 노인학대, ②고령의 부부간 발생하는 학대, ③고령의 자녀에 의한 학대, ④고령의 노인이 본인을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 학대 등을 말함

참고자료(1) 노인학대 신고대응 매뉴얼

■ 노인학대 7대 유형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학대 7대 예방 수칙

- ①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합니다.
- ②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③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 ④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 ⑤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⑥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
- ⑦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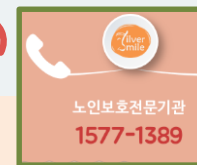
참고자료(1) 노인학대 신고대응 매뉴얼



■ 노인학대의 신고 의무

- ① (신고자)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② (신분보장)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 ③ (신분노출 금지의무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노인복지법 제57조)
- ④ (비밀보장) 학대노인 업무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노인복지법 39조의12)

■ 노인학대 신고 상담



(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으로 신고하는 경우

→ 신고자 기준으로 관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연결됩니다.

해당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직통 번호로 신고함이 바람직합니다.



(2) 정부민원 안내콜센터 **110**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신고할 경우

→ 학대피해 노인과 가까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경찰서 등으로 이관됩니다.

참고자료(2) 노인인권 교육 이수 안내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이수** 안내

- (목적)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노인인권 보호와 개선 및 올바른 이해와 관심 제고
- (교육대상)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제외)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교육
- (교육내용) 노인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고 요령 및 절차 등
- (법적 근거)
 - (1)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6조의3, 시행령 제11조의2, 시행 규칙 제1조의3,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2) 재가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시행령 제14조의2, 시행규칙 제27조의2, 재가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h·well
국민건강보험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는
세계 최고의 건강보장 기관



감사합니다.